

의안번호	제 298 호
의결 연월일	2023. 6. . (제 회)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26일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발 의 자 : 박봉순, 이상정, 김정일,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김성대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인용 조문 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확대(안 제4조)
- 단순오기 및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 등을 정비(안 제5조, 제7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부서 일원화(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 호
- 다. 협 의 : 정책기획관
- 라. 비용추계 : 첨부제외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결정및”을 “결정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위원에 대해서”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 과정, 변동사항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를 “제1항의 내역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로, “제출하고”를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충청북도 포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u>결정 및 집행</u>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p> <p>2. ~ 4. (생 략)</p> <p>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p> <p>1. ~ 7. (생 략)</p>	<p>제1조(목적) -- <u>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 ----- ----- ---.</p> <p>제2조(정의) ----- -----.</p> <p>1. ----- ----- ----- ----- <u>결</u> <u>정 및</u>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8.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
한 사업

② (생략)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 (생략)

2.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 ④ (생략)

⑤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

8.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위원에게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① -----
----- 제4조제1항 -----

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 ① (생략)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 과정, 변동사항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 등) ①·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의 내역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제9조(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

-- 「충청북도 포상조례」-----

-----.

관계 법령 발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